■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[별지 제47호의2서식] <개정 2019. 12. 20.>

<table>
<tr><td colspan="2">유해화학물질

시약 정보 요약서</td><td>이 요약서는「화학물질관리법」제2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시약을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며, 유해화학물질 취급 기준을 준수하여야함을 구매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알려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.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판매업 상호(명칭)</td><td>하크코리아 유한회사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판매업 주소</td><td>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06길 5, 2층 (삼성동, 아이파크타워 2)</td></tr>
<tr><td colspan="2">판매업 대표전화</td><td>02-3484-5700</td></tr>
<tr><td rowspan="3">유해화학물질 정보</td><td>물질명</td><td>Cobalt dichloride</td></tr>
<tr><td>고유번호 또는 식별번호 (CAS No.)</td><td>7646-79-9</td></tr>
<tr><td>용도</td><td>수질 분석용 시약</td></tr>
<tr><td rowspan="5">취급 기준 준수</td><td>취급시설</td><td>-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
- 취급시 보안경, 안면보호구 등 적절한 개인 보호구를 착용할 것
- 적절한 환기장치를 사용하고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서 취급할 것</td></tr>
<tr><td>화학사고 예방</td><td>- 화재시 독성흄(fume)을 방출할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
-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것
- 세안설비와 안전 샤워 시설 설치</td></tr>
<tr><td>보관・저장</td><td>-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저장할 것
- 수산화물 및 알칼리성탄산과 격리하여 저장할 것
- 식료품 저장 용기와 멀리 떨어진 곳에 보관할 것
- 물리적 손상으로부터 용기를 보호하고 정기적으로 누수를 확인할 것</td></tr>
<tr><td>운반</td><td>-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거나 저장·적재·입출고 중에는 내용물이 환경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포장할 것
- 유해화학물질 운전자는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이수한 자 또는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이어야 함.</td></tr>
<tr><td>기타</td><td>-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폐기할 것
- 화학사고 발생 시 소방서 및 화학 물질안전원, 합동재난방재센터 등 화학사고대응기관에 연락할 것
- 취급시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
[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] 참조</td></tr>
</table>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